

입소관리 규정

입 소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받아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 부담을 덜어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목적시설의 표시와 이용)

시설입소자는 거창노인전문요양원(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용물) 그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입소자와 같이 이것을 공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서비스의 범위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칙에 따른다.

제 2 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 3 조 (입소정원)

1.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6명으로 한다.
2.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 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입소정원의 산정기준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입소자의 범위 및 모집방법)

1. 시설생활을 위하여 입소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서, 시설급여 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해당자
 - 2) 장기요양등급 3등급자로서, 시설급여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자
 - 3)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입소하고자 하는 자
 - 4) 기타 해당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입소가 가능한 자
2.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에서 생활하고 요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요구자 및 그 보호자와 시설간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모집하도록 한다.
단, 본인이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계약을 할 수 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담당과 계약하도록 한다.)
 -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 3)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 3 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 5 조 (입소계약의 성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입소계약이 성립된다.

제 6 조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 (계약기간)

1. 입소계약의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받은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1항의 입소계약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의 연장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동안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갱신신청 등을 통하여 등급인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해제 통지 등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8 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시설의 월이용료(본인부담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비용
 - 1) 입소자의 등급별 요양수가에 대하여 본인부담 20%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감면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준
2. 비급여비용
 - 1) 식사재료비
 - 2) 간식비
 - 3) 이 · 미용비
 - 4) 상급병실료 등
 - 5) 기타 시설장이 정하는 사항

제 9 조 (입소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

1. 입소이용료의 청구

시설장은 급여 및 비급여 등 해당월의 입소이용료를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전까지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소이용료 청구방법 : 장기요양비용청구명세서, 선납기준
3. 입소이용료의 납부

입소자 및 그 보호자는 해당월의 입소이용료를 시설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입소이용료의 체납)

1. 입소이용료의 납부자가 이용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 시설은 체납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계약 해

제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 11 조 (입소이용료 반환)

계약의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퇴소할 경우 반환금은 입소인이 퇴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반환금 수취 지정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입소비 잔액등 반환금을 반환한다.

제 12 조 (채무의 이자 및 이행)

입소인의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여 제5조에 의한 월 납입액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년 15% 연체이자를 가산,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고 입소비의 반환금이 부족할 때에는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병 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 13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입소이용료의 변경 및 변경절차)

입소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변경할 수 있다.

1. 급여비용 변경

- 1) 장기요양보험수가의 인상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시
- 2)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변경되는 감면기준에 해당될 때

2. 비급여비용 변경

- 1) 시설장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 2) 변경통지 : 시설장은 비급여비용을 인상하고자 인하할 경우 1개월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 16 조 (건강관리)

1. 시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2. 해당 담당직원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하여 어르신들의 과거병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병명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욕구서비스를 파악하여야 한다.
3.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 17 조 (치료 및 응급사항)

1. 입소자가 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약물치료와 영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의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2. 중환자 또는 수술 및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보호자의 책임하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3. 시설은 입소자가 병원을 통하여 입원치료등을 할 경우 입소자의 생활현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갑작스런 병세의 악화나 응급사항 발생 시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응급이송하여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식 사)

1. 시설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의하여 1일 3식 및 간식 등을 제공한다.
2. 의사또는 간호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영양사는 식이에 관련된 사항을 촉탁의 및 간호사의 지시에 의하여 당뇨식 저염식, 미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보호자 요구에 의한 건강식 및 특별식 제공시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생활상담)

1.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에서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체계를 통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입소자의 생활 상담내용은 생활일지 등을 통하여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 2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

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7 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제 20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 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들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8 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는 시설에서 갖추어진 모든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의 경우 시설장의 허가 하에서 시설직원의 도움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1.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방법 등을 알 수 있게 교육 및 부착물을 통한 사용안내를 하여야 한다.
2. 교육 등의 방식으로 입소자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시설직원이 안전하게 사용함을 도와야 한다.
3. 시설은 입소자가 사용하게 되는 시설물의 사용에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위험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기타 입소자가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6.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제 23 조 (용도의 제한)

1. 입소인은 그 시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작은 새 및 물고기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 9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 25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시설은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시설은 제 1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면책범위
 - 1) 입소자 본인의 과실, 자해행위 등
 - 2) 입소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행위 등
 - 3) 입소자의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건강진단서에 나타난 질병과 발견되지 않은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 4) 입소자가 뜻하지 않은 두부외상으로 지주막하, 경막의 출혈과 뇌내출혈등으로 사망한 경우

- 5) 입소자의 노령으로 인하여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어 갑작스런 흡인성 폐렴 및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
- 6) 입소자의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욕창, 폐렴, 요도염, 장염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7)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8) 그 외 입소자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인한 경우

제 10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본 운영규정은 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

- ① 운영규정의 개정(안)발의는 운영위원회, 시설종사자 또는 시설관계자에 의하여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장이 운영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시설 대표자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다.
- ② 운영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 ③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 ④ 운영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 11 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 28 조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그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12 장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 29 조 (시설의 계약 해제)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을 때
5. 법정전염병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병명등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6. 기타 이 계약 전반을 위반하였을 때

제 30 조 (입소인의 계약 해제)

1. 입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퇴원서를 제출하고 퇴소일까지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소자는 계약해제일까지 생활실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 31 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 13 장 기 타

제 32 조 (의무통지사항)

1.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변경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입소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그 보호자는 제 1항의 이유로 통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등의 사유로 보호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하여지지 않을 경우 그 지인 및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 활용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통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른다.

제 34 조 (규정외의 조항)

1.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시설과 입소자 및 그 보호자의 상호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